



## 조세심판원,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

- (신속한 사건처리)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조정제도 도입 등
- (공정한 심판결정)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및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등
- (전문성·책임성 강화)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

□ 조세심판원(원장 황정훈)은 4월 20일(목) ‘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
□ ‘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하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.

\* 기관별 심판/심사청구 비율(‘21년) : 조세심판원 87.6%, 국세청 4.6%, 감사원 7.8%

○ 다만,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,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건수가 급증\*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
\* 조세심판 청구건수 : (‘08년) 5,244건 → (‘22년) 10,373건 (약 2배 ↑)

※ 평균처리일수 : (‘08년) 175일 → (‘22년) 234일 (1.33배 ↑)

⇒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문성·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 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.

### < 신속한 사건처리 >

① (사건조사 : 표준처리절차 폐지)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(납세자)·추가답변(처분청)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\*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

\*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

- ② (회의운영 :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)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
- ③ (조정검토 :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) 심판원 운영규정상의 조정검토 기간을 축소(30일 → 20일)하는 한편, 세목별 담당제 도입·담당자 직급상향·결재단계 축소 등 관리강화를 통해 조정검토기간 단축
- ④ (기타) 일정사건\*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, 주심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(청구액 3천만원 → 5천만원 미만) 추진

\* 상속·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평가,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

### < 공정한 심판결정 >

- ① (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) 현재 개인만 국선대리 신청이 가능하나, 영세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확충
  - ② (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) 취업심사대상기관\*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
- \*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·회계법인,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
- ③ (정책협의회 신설) 납세자 권리보호기관(조세심판원·감사원·국세청) 정책협의회의 年 1회 이상 개최를 정례화하여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결정의 통일성 확보

### < 전문성·책임성 강화 >

- ① (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) '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 한 결과,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엄격한 요건\* 하에 비상임심판관 연임을 허용

\* 연임 등은 인사심의위 의결(4차례 중임은 위원 전원의 2/3 이상 의결) 필요

② (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)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\* 축소를 추진

\* (현행) 원장, 상임심판관 전원(8명) 및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(최소 17명)

③ (연구분석팀 신설 추진) ‘23년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“연구분석팀” 신설을 추진

※ (붙임자료) 1. 추진전략 및 과제 2.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3. 추진일정

담당 부서	조세심판원 행정실	책임자	행정실장	은희훈 (044-200-1720)
		담당자	사무관	주강석 (044-200-1731)



**목표**

**납세자 권리보호 강화**

**추진 전략**

**신속한 사건처리**

**공정한 심판결정**

**전문성·책임성 강화**

**추진 과제**

**신속한 사건처리**

- (배정) 사건 배정횟수 확대
- (조사)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
- (회의) 쟁점설명기일 보완 및 심판관회의 인원변경
- (검토) 조정검토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(세목별 담당제 등)
- (기타) 조정제도 도입 및 소액사건 범위 확대

**공정한 심판결정**

- (영세납세자)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
- (비상임심판관)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 신설
- (심판·조사인력) 인사교류 대상기관 변경
- (정책협의회)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
- (의견진술) 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설치

**전문성·책임성 강화**

- (비상임심판관) 중임제한 완화 및 신분보장 합리화
- (합동회의) 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
- (자문위원회)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
- (연구분석) 판례 등의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팀 신설

**1 신속한 사건처리****<사건배정>****사건 배정횟수 확대**

○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2주에 1회\* 사건이 배정되었으나, 휴정기간 등을 제외하고 1주에 1회 사건을 배정하는 등 사건 배정횟수를 확대함으로써 배정 소요시간 단축

\* 무작위 배정을 위해 사건을 모아 2주에 1회 이상 배정토록 규정(조세심판원 운영규정 §7①)

※ 4.20일 기준 배정횟수 : ('22년) 8회 → ('23년) 14회

**<사건조사>****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**

① (표준처리절차 폐지) 신중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 양측에게 항변·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\*하여 사건처리의 지연 요인이 되었던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여 사건조사기간을 단축

\* 주장 및 반론 기본절차 : 청구인 심판청구 - 처분청 답변(10일) - 청구인 1차 항변(2주) - 처분청 2차 답변(2주) - 청구인 2차 항변(2주) - 처분청 3차 답변(2주)

- 항변기회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기본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, 처분청의 추가답변 및 청구인의 추가항변 기회를 탄력적으로 부여

- 항변·추가답변 기간을 1회당 2주씩 부여하였으나, 처분청 답변기간(국세기본법 §69④)과 같이 1회당 10일로 단축

② (심판조사관 직접 처리) 선결정이 없거나 법령해석이 쟁점인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심판조사관(과장)이 사건조사서 작성 등 심판절차의 쏠 과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상황을 보완

※ 국세기본법(§67⑧)상 "조세심판원에 조사사무를 담당할 심판조사관 및 보조 직원을 둔다"고 하여 조사의 기본 담당자가 심판조사관임을 규정

## <회의운영>

## 쟁점설명기일 보완 및 심판관회의 인원 변경

- ① (쟁점설명기일\* 보완) 고난이도 사건을 반드시 쟁점설명기일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였으나, 필요시 주심심판관이 지정하도록 보완
    - \* 일정사건의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하여 의결없이 의견청취만을 진행
  - 대상사건 지정 후에도 필요시 쟁점설명기일을 미실시할 수 있음을 근거규정상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쟁점설명기일 실시를 방지
  - ② (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) 가부동수로 인한 의결보류를 방지하고 신속하며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심판관회의의 구성인원을 종전 4명(상임 2명, 비상임 2명) ⇒ 3명(상임 2명, 비상임 1명)으로 변경
- ※ 5월부터 소액심판부 시범실시 후 시행성과에 따라 일반심판부로 전면 실시 추진

## <조정검토>

## 조정검토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

- ① (조정검토 기간단축) 법령상 조정검토 기간은 30일이나 이를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운영
  - ② (조정검토 관리강화)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도입<sup>1)</sup>, 조정담당자 직급 상향<sup>2)</sup> 및 결재단계 축소<sup>3)</sup>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조정검토
- ※ <sup>1)</sup>조정팀이 심판부가 아닌 각 세목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조정 추진  
<sup>2)</sup>조정팀장 및 팀원으로 각각 조정경험이 있는 서기관 및 사무관을 배치  
<sup>3)</sup>행정실장을 조정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

## <기타>

## 조정제도 도입 및 소액사건 범위 확대 추진

- ① (조정제도 도입) 일정한 사건\*은 양측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(mediation) 제도 도입을 추진
- \* (예시) 상증법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,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
- ② (소액사건 범위 확대) 주심심판관 단독으로 심리·의결이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(국세 : 청구세액 3천만원 → 5천만원 미만)를 추진
- ※ (지방세) 청구세액 1천만원 → 2천만원 미만

## 2

### 공정한 심판결정

#### <영세납세자>

####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

-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사건이 확대(청구세액 3천만원 → 5천만원 이하) 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수를 확대(20명 → 24명)하는 한편,
  - 개인만이 가능하던 조세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
- ※ (일반행정심판) 직전연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게 국선대리 지원(21~)

#### <비상임심판관>

####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원회 신설 추진

- ① (결격사유 신설) 취업심사대상기관\*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\*\*의 비상임심판관 위촉금지를 추진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
  - \*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·회계법인,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
  - \*\* 조세심판원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, 변호사 등 징계처분 후 5년 미경과자
- ② (인사심의위 신설) 비상임심판관 인사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·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

#### <심판조사인력>

#### 인사교류 대상기관 변경

-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종전의 과세관청에서 기재부 등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하여 심판결정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

#### <정책협의회>

####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

- 조세심판원·감사원·국세청 간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(연 1회 이상) 하여 기관 간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

#### <의견진술>

#### 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등 설치

- 청사이전 시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하여 당사자의 공격·방어권 보장을 지원

### 〈비상임심판관〉 중임제한 완화 및 신분보장 합리화 추진

- (중임제한 완화)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의 연임을 허용(총 임기 9년)하고, 필요시 1회에 한해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
  - ※ 연임 등은 인사심의위 의결(3차례 중임은 위원 전원의 2/3 이상 의결) 필요
- (신분보장 합리화) 직무태만 등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 담보장치를 마련
  - ※ (현행 해촉사유) : ① 금고 이상의 형(刑) 선고 ②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불가능

### 〈합동회의〉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추진

-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\* 축소를 추진

\* (현행) 원장, 상임심판관 전원(8명) 및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(최소 17명)

### 〈자문위원회〉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

-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심판제도의 개선·발전을 위해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\*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

\* 학계(세법·경영·회계·세무 등)·연구기관·전문자격사 단체(세무사회 등)의 대표, 전직 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

### 〈연구분석〉 판례 등의 조사·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팀 신설

-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소송의 판결 등을 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공유·교육함으로써 심판조사에 반영하도록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
  - ※ '23년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·결과 등을 반기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(「국세기본법」 §81 신설)

### 붙임3

### 추진일정

추진전략	세부 추진과제		시기	비고
신속한 사건처리	배정	사건 배정횟수 확대	'22.8월~	既 시행 중
	조사	표준처리절차 폐지	'23.4월	운영규정 개정 중
		심판조사관 직접 처리	'23.1월~	既 시행 중
	회의	고난이도 사건의 필요시 쟁점설명 기일 대상사건 지정	'23.4월~	既 시행 중
		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 지정 후 필요시 미 실시 명확화	'23.3월~	운영규정 既 개정
		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	'23.7월	소액심판부(5~6월) 시범실시 후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
	검토	조정검토 기간단축	'23.3월~	운영규정 既 개정
		조정검토 관리강화	'22.7월~	既 시행 중
기타	조정제도 도입	'24.1월	법령 개정 필요(협의 중)	
	소액사건 범위 확대	'24.2월	시행령 개정 필요(협의 중)	
공정한 심판결정	국선대리인 수 확대		'23.4월~	24명 위촉('23.4.6.)
	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		'24.2월	법령 개정 필요(협의 중)
	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마련		'24.2월	시행령 개정 필요(협의 중)
	비상임심판관 인사심의위 신설		'23.5월	운영규정 既 개정
	인사고료 대상기관 변경		'23.7월 이후	
	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		'23.3월~	1차 회의('23.3.17.) 既 개최
	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등 설치		'23.6월 이후	청사이전과 연계
전문성 책임성 강화	비상임심판관 증임제한 완화		'24.1월	법 개정 필요(협의 중)
	비상임심판관 신분보장 합리화		'24.1월	법 개정 필요(협의 중)
	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		'24.1월	법 개정 필요(협의 중)
	정책자문위원회 신설		'23.6월	운영규정 既 개정
	연구분석팀 신설		'23.하반기	협의 중

※ (법) 국세기본법, (시행령) 국세기본법 시행령, (운영규정) 조세심판원 운영규정[국무조정실 훈령]